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9. 11.(목)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선

##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91호
- 제출일: 2025년 8월 29일
- 제출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발생 시,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보상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직무 범위 확대(회기중 또는 공무여행→상시)(안 제2조제1호)
- 직무 인정 범위·장애 및 상해 기준 정비(안 제3조~제5조)
-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장애·상해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 현행 다소 추상적이었던 보상 사유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장애 및 상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직무의 범위를 현행 ‘회기 중 또는 공무여행’ 에서 ‘의원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전반’ 으로 확대하였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사망, 장애, 상해로 구체화한 점은 실효성을 높혔다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점, 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92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상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위해 제7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시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및 부서별 구매 제품, 용역 등을 발굴·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시설과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상위법령 및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93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보험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 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발달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크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현황’ 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은 28만 1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수(263백만명)의 11%입니다.

□ 전국 장애인(유형 장애정도)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장애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2,631,356	1,132,644	246,182	442,034	22,389	233,322	234,703	47,350	103,215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단위:명
	111,084	4,781	10,512	16,098	2,756	17,397	6,889	

- 현재 달성군은 2025년 8월 기준 발달장애인은 총 1,505명으로 지적 장애인 1,264명, 자폐성 장애인 241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수(13,400명)의 약 12%로 조사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2020년 발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한 특정한 지적, 운동적,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거나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어렵다는 진단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집중의 어려움, 성행동 문제, 낮은 학습동기,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전적 행동이란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혹은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고 가족의 권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공격 등의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은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행동치료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전적 행동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상위법령의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도전적행동에 대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증진을 기대하는 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94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3조의 2)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비용추계서 : 붙임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읍·면)의 요청으로 소집된 회의 참석 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항목에 회의 참석 시 수당지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그 이상으로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군 행정과 읍·면 행정에 헌신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을 위한 지원안으로서 읍·면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관내에는 새마을조직 외에도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새마을지도자들은 그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온 점을 들어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95호
- 제출일: 2025년 8월 29일
- 제출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어르신우대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변동된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사업의 신청 주체를 변경함

## 3. 주요내용

-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른 표현 정비
- 지원대상 삭제(안 제7조)
- 사업의 신청, 선정, 취소의 주체 변경(안 제15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우대업소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신청과 선정·취소의 주체를 군수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 최근 제7조 지원대상에서 목욕업소는 등록 및 이용이 저조한 바, 삭제하여 실질적 수요가 높은 업소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사업의 신청·선정·취소 권한을 기존의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및 관리 권한을 군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어르신우대와 관련한 우대업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및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소재를 군수로 하여 명확하게 한 점 등을 볼 때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96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영유아들이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 쉽게 노출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과몰입·과의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영유아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달성군의 영유아·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놀이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 현행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보호자는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에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확한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 그 보호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모호성을 줄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현행 제7조의 영유아에 대한 발달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안내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사업을 보다 세분화 했다는 점, 또한 변화해가는 세대를 반영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놀이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시의적 조치로,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영유아발달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와 지원 사업의 명확화 및 지원대상의 다양화를 하고자 한 점 등을 볼 때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